

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의 재위탁 절차 추진
- 나.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요양원 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
-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
- 시설규모 : 지하1~지상4층 (3,183.53 m^2)
- 재위탁 예정기간 : 2026. 2. 1. ~ 2031. 1. 31.(5년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서울특별시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
 - 시설보호대상 중증 치매·중풍 노인 등의 입소보호
 -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입소(이용)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
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'24. 1.)

○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('23. 6.)

- 2025년 시립노인요양시설(영보,송파) 민간위탁 추진계획(어르신복지과-5636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 장기적·지속적인 서비스 필요
-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복지실 돌봄복지과 정소율 (☎2133-7422)